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5.

발 의 자 : 정준호 · 박희승 · 이연희
박균택 · 채현일 · 문진석
양부남 · 한준호 · 맹성규
전진숙 · 김준혁 · 박상혁
안도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,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됐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예비군의 건강이 저해되고 있음.

효율적인 예비군 훈련 시행과 예비군의 건강 관리를 위해 폭염 같은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폭염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기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,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과 예비군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 6조).
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 중 “경우 실내훈련,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“경우와 「기상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실내훈련, 훈련시간 조정, 훈련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미세먼지에”를 “미세먼지 및 기상특보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훈련) ① ~ ④ (생 략)	제6조(훈련) ① ~ ④ (현행과 같 음)
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「대기 환경보전법」 제8조에 따른 대 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<u>실내훈련,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.</u>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와 「기상법」 제13조의2 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에는 실내훈련, 훈련시간 조정, 훈련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.</u>
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<u>미세먼지에</u> 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	⑥ ----- ----- <u>미세먼지 및 기상특보에</u> ----- ----- -----.